



넥스오토

문서번호
NEX-BO-T-09

개정일: 2024-08

저장매체 불용처리지
침

개정차수: 4

	<h1>넥스오토</h1> <h2>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h2> <h3>침</h3>	문서번호 NEX-BO-T-09
개정일: 2024-08		개정차수: 4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1	2017-09-29	2010-09-29	초도 제정
2	2023-12-01	2023-12-01	디오토 상호변경
3	2024-08-01	2024-08-01	넥스오토 상호변경
4	2024-08-01	2024-08-01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목차수정

목 차

1.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목적
2.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정의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
4.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5. 저장자료 삭제책임
6. 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h1>넥스오토</h1>	문서번호 NEX-BO-T-09
개정일: 2024-08	<h2>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h2>	개정차수: 4

7. 저장자료 삭제확인

8.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조치

9. 정보시스템 외부반출 시 보안조치

	<h1>넥소토</h1>	문서번호 NEX-BO-T-09
개정일: 2024-08	<h2>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h2>	개정차수: 4

1. 개요

1.1 목적

- 1.1.1 본 지침은 넥소토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 절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2.1 "저장매체"란 자기 저장장치·광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 2.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 2.3 "소자"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초기화) 만들어 저장 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2.4 "완전포맷"이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

- 3.1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 또는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자료의 보안조치 책임은 정보보안그룹이 관리한다.

4.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 4.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4.1.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 4.1.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포함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 4.1.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 4.1.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 4.1.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저장자료 삭제책임

- 5.1 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h1>넥소토</h1>	문서번호 NEX-BO-T-09
개정일: 2024-08	<h2>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h2>	개정차수: 4

5.2 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정보보안그룹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6. 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6.1 정보보안그룹은 붙임1의 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자료별 삭제방법에 의거·삭제하여야 한다.

6.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에 사용한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7. 저장자료 삭제확인

7.1 정보보안그룹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에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2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정보보안그룹이 입회하여 삭제 절차·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3 저장자료 삭제 후 폐기 시 관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불용 저장매체 파기이력대장)

8.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조치

8.1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고장수리 등을 위해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하여 저장자료 삭제 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8.2 정보시스템을 임차할 때에는 임차기간 만료 후 반납에 대비하여 해당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9. 정보시스템 외부반출 시 보안조치

9.1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그룹의 통제를 받아야하며, 정보보안그룹은 그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9.2 저장매체의 고장수리 또는 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9.3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에는 당해 시스템의 사용 기관·부서 및 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h1>넥스오토</h1> <h2>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h2>	문서번호 NEX-BO-T-09
개정일: 2024-08		개정차수: 4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8.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